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2. 효력발생일

- 2014.12.08

## 3. 변경사유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증권거래비용의 변경,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 등 통계자료 갱신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

##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행	변경
<p><b>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b>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8.(생략)                      9.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②(생략)</p> <p><b>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b>                      ①~③(생략)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⑦(생략)</p> <p><b>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b>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p>	<p><b>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b>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8.(현행과 같음)                      9.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②(현행과 같음)</p> <p><b>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b>                      ①~③(현행과 같음)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⑦(현행과 같음)</p> <p><b>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b>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③~④(생략)</p>	<p>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현행과 같음)</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li>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2015.1.1)</li> </ol> <p>③~④(현행과 같음)</p>
--	---

###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li> </ol>

		<p>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4.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8층																	
5.투자운용인력 가.운용전문인력	<p>책임운용인력 : 유승우 TI 부문대표 부책임운용인력 : 김관오 주식운용 2 팀장</p> <p>※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 2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운용전문인력 : 김영배 주식운용본부장</p> <p>※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p>																	
나.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명</th> <th>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부책임운용전문인력</td> <td>최승용</td> <td>2012.08 ~ 2013.04</td> </tr> </tbody> </table>	구분	성명	운용기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승용	2012.08 ~ 2013.0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명</th> <th>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책임운용전문인력</td> <td>유승우</td> <td>2005.01.07-2014.02.10</td> </tr> <tr> <td>김관오</td> <td>2014.02.10~2014.11.20</td> </tr> <tr> <td>부책임운용전문인력</td> <td>최승용</td> <td>2006.08.03-2013.04.30</td> </tr> </tbody> </table>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유승우	2005.01.07-2014.02.10	김관오	2014.02.10~2014.11.2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승용	2006.08.03-2013.04.30
구분	성명	운용기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승용	2012.08 ~ 2013.04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유승우	2005.01.07-2014.02.10																	
	김관오	2014.02.10~2014.11.2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승용	2006.08.03-2013.04.30																	

			전남중	2008.07.23- 2014.02.10								
			최재혁	2010.10.20- 2014.02.10								
			김관오	2012.08.20- 2014.02.10								
			차진호	2014.02.10~ 2014.12.03								
8.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지급비율(연간, %)				
	구분	K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I Class	구분	K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I Class
	집합투 자업자 보수	연 0.654%					집합투 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 사 보수	연 1.5%~ 1.0%	연 0.9 %~0.3 %	연 0.9 %~0. 5%	연 0.3% ~0.1%	없음	판매회 사 보수	연 1.5%~ 1.0%	연 0.9 %~0.3 %	연 0.9 %~0. 5%	연 0.3% ~0.1%	없음
	신탁업 자 보수	연 0.03%					신탁업 자 보수	연 0.03%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연 0.016%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 용	연 0.004%					기타비 용	연 0.004%				
	총 보수. 비용	연 2.204 %~ 1.704 %	연 1.604% ~ 1.004%	연1.60 4%~ 1.204 %	연 1.004 %~ 0.804 %	연 0.704 %	총 보수. 비용	연 2.204 %~ 1.704 %	연 1.604% ~ 1.004%	연1.60 4%~ 1.204 %	연 1.004 %~ 0.804 %	연 0.704 %
증권 거래비 용	연 0.354%					증권 거래비 용	연 0.430%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10.12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3.10.1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증권발행분담금 부담주체가 2013.08.29 기준으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됩니다.</p>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4.10.12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4.10.1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증권발행분담금 부담주체가 2013.08.29 기준으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p>
제3부 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요약재무정 보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13.10.12기준	2014.10.12기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을지로 2가) ☎ 1588-111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m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m			
4.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HSBC 펀드서비스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층 ☎ 02-3771-98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 02-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KIS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782-10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pricing.co.kr	www.bond.co.kr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icepni.co.kr	www.bond.co.kr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가. 의무해지</p>	<p>-</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	----------	---